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48호 2020. 2. 6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2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----- 1
- 사천시 고시 제28호 안도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고시 ----- 2
- 사천시 고시 제29호 원두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고시 ----- 4
- 사천시 고시 제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---- 7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 648 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22호

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

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·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.

2020. 1. 29.

사 천 시 장

1.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

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·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.

2.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

※ 해제근거 :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

연번	초 지 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해제면적 (㎡)	지정해제 사 유	비 고
1	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	산71-10	목장	83,697	83,697	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 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2년이상 관리·이용되지 아니한 초지	

3. 관계도면 : 게재생략

[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(☎055-831-3779)로 문의]

4. 이해 관계인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 기 바랍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648 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28호

안도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고시

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『안도마을 만들기사업』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(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)제3항 및 제59조(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)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6일

사 천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안도마을 만들기사업
2. 사업의 목적 : 본 사업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,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3. 사업비 : 500백만원
4. 주요 사업내용

사업분야	세부사업	사업개요	사업비 (백만원)	비고
합 계			500	
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			182.0	
	마을회관리모델링	A=118.42m ²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	116.0	
	무선방송설비	무선방송설비 설치 1식	66.0	

사 천 시 공 보

제 648 호

사업분야	세부사업	사업개요	사업비 (백만원)	비고
지 역 경 관 개 선		L=630m	232.0	
	질매해안둘레길	해안둘레길 조성, 등 의자 설치, 안내판 설치	232.0	
지 역 역 량 강 화	리더교육	1식	8	
	DIY경관가꾸기	1식	4	
	질매섬공예교육	1식	10	
	선진지견학	1식	9	
	경관협약컨설팅	1식	5	
	부 대 비 용	기본 및 실시 설계 등	50.0	

5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장

6. 사업시행기간 : 2019년~2021년(3년간)

7.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

일 련 번 호	소재지		지번	지 목	편입면적(m ²)	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	비고
	면	리			대장	편입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내용	
합 계					1,519							
1) 마을회관리모델링												
1	곤양	중항 리	191-1	대	840	-	중항어촌계					
2) 질매해안둘레길												
1	곤양	중항	156	답	205		김**					
2	곤양	중항		답			국토교통부					
3	곤양	중항		답			김**					
4	곤양	중항		제			국토교통부					

8.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(055-831-32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648 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29호

원두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고시

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『원두마을 만들기사업』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(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)제3항 및 제59조(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)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6일

사 천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원두마을 만들기사업
2. 사업의 목적 : 본 사업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,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3. 사업비 : 492백만원
4. 주요 사업내용

사업분야	세부사업	사업개요	사업비 (백만원)	비고
합 계			492	
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			296	

사 천 시 공 보

제 648 호

사업분야	세부사업	사업개요	사업비 (백만원)	비고
	원두마을 문화센터 리모델링	마을회관 리모델링(156㎡)	228	
	느티나무 쉼터 정비	쉼터조성 및 마을공원 주변정비	33	
	원두마을 두벽이길 정비	마을종합안내판 설치 두벽이 종합안내판 꽃나무길 조성 벤치, 그늘막설치(3식)	35	
지 역 역 량 강 화			144	
	리더교육	1식	14	
	국내선진지 견학	1식	20	
	원두풍물단 추가육성	1식	30	
	건강체조동아리 추가육성	1식	30	
	신규동아리 육성교육	1식	30	
	원두마을 두벽이축제	1식	21	
부 대 비 용			52	
기본 및 실시 설계 등				

5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장

6. 사업시행기간 : 2019년~2021년(3년간)

사 천 시 공 보

제648호

7.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

일련번호	소재지		지번	지목	편입면적(m ²)	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	비고
	면	리			대장	편입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내용	
합 계												
1) 마을회관 리모델링												
1	사천	두량	845-2	대	156		사천시					
2) 느티나무 쉼터 정비												
1	사천	두량		구거			농림수산부					
2	사천	두량		도로			정**					
3	사천	두량		답			정**					
3) 원두마을 뚜벅이길												
1	사천	두량		도로			국토교통부					
2	사천	두량		도로			사천시					
3	사천	두량		구거			농림수산부					
4	사천	두량		유			한국농어촌공사					
5	사천	두량		구거			농림수산부					

8.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(055-831-32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648 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31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『진도도서개발사업』예정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6일

사 천 시 장

1.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

사 업 명	위 치	면 적(m ²)	용도지역	비고
진도도서 개발사업	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6-15번지 일원	157,742	계획관리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	최초지정일 2017.2.9.

2. 제한사유

- 『진도 도서개발사업』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
-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적.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

3. 제한연장 사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함
- 도시.군기본계획이나 도시.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

사 천 시 공 보

제648호

도시·군기본계획이나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 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
4. 제한내용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
-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건축법 제11조,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·신고
- 다음 대상은 제외
 -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·증축과 가설건축물 건축
 - 토지의 분할, 공익사업,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

5. 제한기간 연장

-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기간 만료일(2020. 2. 9)로부터 2년간 연장하며,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로 함.

6.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7. 기타 :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(☎ 055-831-3165)에 비치 열람함.